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 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개선(안 제25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제2차 시험과목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2조)

응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임용시험 과목 개편(별표1)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직류, 지적직류, 방역직류, 의료 기술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라. 기타 개정사항(별표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현행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 중에서 제1차시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합격증명서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표1의 출입국관리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시험과목		직렬	출입국관리
			직류	출입국관리
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 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경채 · 전직 ·	제1차	필수	헌법,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승진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제법, 이민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영어
		제2차	필수	행정법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이민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영어
		제2차	필수	
			선택	국제법개론, 이민법개론 중 1과목

별표1의 방역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시험과목		직렬	조건
			직류	방역
5급 이 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감염병관리
	경채 · 전직 ·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역학

	승진		선택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보건행정학, 미생물학 중 1과목
	공승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감염병관리
6 급 및 7 급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 해석영역, 상황판단 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제2차	필수	역학
			선택	보건통계학, 보건교육학, 보건행정학, 미생물 학 중 1과목
8 급 및 9 급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제2차	필수	공중보건, 역학
			선택	

별표1의 의료기술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시험과목		직렬	의료기술
			직류	의료기술
5 급 이 상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 해석영역, 상황판단 영역, 헌법, 영어, 한 국사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의료관계 법규, 감염병관리
	경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선택	의료관계법규, 임상 병리학, 감염병관리, 진료영상학, 방사선 관리학, 물리치료학, 치위생학, 보건통계학 중 1과목

	공 승	제1차	필수	보건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보건행정학, 의료관계 법규, 감염병관리
6 급 및 7 급	공 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 해석영역, 상황판단 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해부생리학
	경 채 · 전 직 · 승진	제1차	필수	보건학
		제2차	필수	보건 행정학
			선택	임상병리학, 감염병 관리, 진료영상학, 방 사선관리학, 물리치 료학, 치위생학, 보건 통계학 중 1과목
8 급 및 9 급	공 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공중보건, 해부생리학 개론
	경 채 · 전 직 · 승진	제1차	필수	생물
		제2차	필수	공중보건, 의료관계 법규
			선택	

별표1의 지적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
			직류	지적
5 급 이 상	공 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 해석영역, 상황판단 영역, 헌법, 영어, 한 국사
		제2차	필수	지적학,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경 채 · 전 직 · 승진	제1차	필수	지적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지적측량학
			선택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 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6 급 및 7 급	공 승	제1차	필수	지적학,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응용측량학
	공 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 해석영역, 상황판단 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경 채 · 전 직 · 승진	제1차	필수	지적학
		제2차	필수	행정법
		선택		지적측량학, 응용측량학, 제도 및 적산학, 지적법규, 도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1과목
8 급 및 9 급	공 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법규
	경 채 · 전 직 · 승진	제1차	필수	수학
		제2차	필수	지적측량, 지적법규
		선택		

별표3의 토플(TOEFL)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상
--	------------	------------	------------

별표3의 텡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385점 이상	452점 이상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2.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3.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 ④ (생략)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u>.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 중에서 제1차시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u>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2. (현행과 같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신 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응시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격 증명서 등-----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15